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EPR 제도의 시행

폐기물은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한 생산과 소비의 형태가 지속되면서 영원히 발생되는 필연적인 부산물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질적인 성상변화나 양적인 증감은 있을지라도 하나뿐인 지구가 있는 한 존재하리라 여겨진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가 계속되면서 천연자원이 마구 채취되어 남용되고 나아가서는 지구상의 천연자원의 고갈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폐기물 문제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감량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는 발생된 폐기물은 단순한 소각이나 매립 등 처리처분을 가능한 지양하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회수 이용의 개념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셋째는 폐기물의 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고려대상은 환경 위생적으로 안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재활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재활용 과정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면 재활용이란 명분하에 본질을 퇴색케 하는 경우가 되므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해 볼 때 폐기물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로서 폐기물의 자원화 개념은 중요한 정책으로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하겠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재활용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추진하였고 그 성과도 괄목하리만치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형식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지사장

그 중에서도 2003년 1월부터 새롭게 전면 시행하게 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추진이라 하겠다.

이것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생산자 스스로에게 부담도록 한 책임의무제도이다.

생산자는 생산제품의 연도별 재활용 의무대상 여부 확인 및 출고실적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고,

또한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기관(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의무량의 적정산출 검토 및 재활용 수탁자의 적정성 및 재활용 방법이나 제 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후에 승인 통보하는 제도이다.

의무이행 계획서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인가한 10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일괄 위탁처리 하는 방법과 재활용업체에 개별위탁 처리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지사에 접수 처리된 경우 대부분의 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 일괄 위탁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활용 정책의 대전환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EPR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정부의 제도홍보교육 및 기업체의 인식전환, 관리감독기관의 행정력 향상 등 이해 관계자간에 역할분담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본 제도가 초기에 정착하여 재활용 체계가 한 단계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업체 및 관련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